

	총장 관서관리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11. 3.
		최종개정일자	2017. 8. 9.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총장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총장관사(이하 “관사”라 한다)라 함은 목포과학대학교에서 부동산 임대차(전세) 한 주거시설로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총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기간) 관사의 사용기간은 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2017. 8. 9.개정>

제4조(관리책임) ①사용자는 관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②관사용 비품은 목포과학대학교 물품관리 관계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③사용기간의 만료시에는 반드시 비품목록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리비 부담) ①관사 관리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목포과학대학교 운영비에서 부담한다. <2017. 8. 9.개정>

1. 수선비 및 화재보험료 등 유지관리비
2. 주거에 필요한 기본비품 구입 및 수리비
3. 아파트 관리비, 공공요금 및 난방용 연료비 등 일상운영비
4. 청소 및 위생용품비

② 제1항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6조(비품의 관리) 관사 관리부서의 장은 대학소유의 관사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별도의 비품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. <2017. 8. 9.신설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관서관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